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다. 토목건축공사업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라.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 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 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법인	8억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마. 조경공사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 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건설업종	업무분야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가. 지반조 성·포 장 공사	1) 토공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법인 및 개 인	1억5천 만원 이상

업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다. 금속·창호·	1) 금속구조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법인 및	1억5천만원

지붕 · 건축물 조립공사 사업	· 창호 · 온실 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개인	이상
	2) 지붕 판금 · 건축물 조립공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라.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 업	1) 도장 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 만원 이상
	2) 습식 · 방수 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3) 석공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마. 조경식 재·시 설 물 공 사업	1) 조경 식 재 공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 만원 이상
	2) 조경 시 설 물 설 치 공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바. 철근·콘 크리 트 공 사 업	철근·콘 크리트공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 만원 이상
사. 구조물 해 체· 비 계 공 사업	구조물 해 체·비 계 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 만원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자. 철도·궤도공사사업	철도·궤도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운반궤도차(모터차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	법인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차. 철강구조물공사사업	철강구조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카. 수중·준설공사사업	1) 수중공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 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타. 승강기 · 삭도 공사업	1) 승강기 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 만원 이상
	2) 삭도설치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가) 기중기(건설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격취득자 2명 이상 (나) 전기용접기 (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원치 (동력 winch: 쇠줄 양 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가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기밀시험		

시 설 공 사 (제 1 종)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 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 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 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 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 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 한 실무경력이 5년 이 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 사가 실시하는 가스시 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을 이수한 사람	설비 (나) 내압시험 설비 (다) 자기압력 기록계 (라) 가스누출 검지기 (마) 공기호흡 기 또는 공 기를 내보 내는 마스 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전류계) (사)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천 MΩ까지 측 정할 수 있 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 정기[아들 자캘리퍼스 (아들자 calipers: 아 들자가 달 려 두께나 지름을 재 는 기구를 말한다)· 내외경마이 크로미터 (내외경미	
-------------------------	--	---	--

			세 측 정 기) ・ 초음파측 정 기 ・ 다이 열 계 이 지 (톱 니 바 퀴 식 측 정 기) ・ 도막측정 기 등] (아) 각종 압력 계 (자) 표준이 되 는 온도계		
하. 가스 · 난 방 공 사업	1) 가스 시 설 공 사 (제 2 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 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 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 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 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 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 람	(가) 기밀시험 설비 (나) 자기압력 기록계 (다) 가스누출 검지기		
	2) 가스 시 설 공 사 (제 3 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	(가) 기밀시험 설비 (나) 자기압력 기록계		

	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 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 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 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 공사(제 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 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 공사(제 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 속가공·금속재료·금속 제련·세라믹 기술·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 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 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 상의 건설기술인	(가) 가스분석 기 1대 이 상 (나) 광고온계 (光高溫計: 밝기로 온 도를 재는 기계를 말 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 는 저항식 으로서 온 도측정범위 가 1,200℃ 이상인 온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 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마) 아틀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 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 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거. 시설물 유지 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가) 육안검사 장비: 돋보기·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나) 비파괴시험을 위한 다음의 장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비

① 반발경도
(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
를 말한다)측
정기 1대 이
상

② 음파를 이
용하는 측정
장비: 망치·
체인 1대 이
상

③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
정장비 1대
이상

(다) 자기감응
검사장비:
콘크리트
피복측정장
비 1대 이
상

(라) 전기에 의
한 부식검
사장비: 콘
크리트전기
저항측정장
치
(resistivity),
전위차측정
장치(half
cell
potential)

			각 1대 이상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	--	--	--

비고

1. 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라.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바.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 표의 장비 중 「철도 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 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자본금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